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3561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과세표준,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가. 원고는 2015. 4. 24. B과 사이에 B 소유의 [redacted]시 C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8호, 109호, 110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4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30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2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27억 1,800만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2015. 6. 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0. [redacted]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하여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대리인인 법무사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며 과세표준액을 30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1억 3,892만 원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7. 피고에게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 하나의 서류로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redacted]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한 것이며 위 조항 단서의 취지로 볼 때 원고가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등으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화해조서 등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다.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인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3억 200만 원으로서 총 매매대금 30억 2,000만 원의 10%에 불과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유진

판사 박수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6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끝.